

프랜차이즈 하나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p> <p>제1조 <생 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 1. ~ 7. (생 략) 8. "하나 B2B 에스크로 시스템 : B2B multi-clearing system"(이하 "MCS"라 합니다)이란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기반 하에 "은행"이 개발·운영하는 전자적 정산 시스템(www.hanaescrow.com)을 말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MC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가입, 정산내역 등록, 확인 등의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9. (생 략)</p> <p>제3조 ("에스크로 서비스"의 신청 및 약관 동의) 1.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MCS"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동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은행"에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MCS"에서 각각의 입금계좌 은행은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2.~ 5. (생 략)</p> <p>제4조 ~ 제8조 <생 략></p> <p>제9조 (면책) 1. ~ 2.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p> <p>제1조 <생 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 1. ~ 7. (생 략) 8. "하나 B2B 에스크로 시스템 : B2B multi-clearing system"(이하 "MCS"라 합니다)이란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하여 인증기관 인증서 기반 하에 "은행"이 개발·운영하는 전자적 정산 시스템(www.hanaescrow.com)을 말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MC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가입, 정산내역 등록, 확인 등의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9. (생 략)</p> <p>제3조 ("에스크로 서비스"의 신청 및 약관 동의) 1.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MCS"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동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은행"에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MCS"에서 각각의 입금계좌 은행은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2.~ 5. (생 략)</p> <p>제4조 ~ 제8조 <생 략></p> <p>제9조 (면책) 1. ~ 2. (생 략)</p>	<p>"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수정</p> <p>"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수정</p>

프랜차이즈 하나B2B 에스프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3. “은행”은 본 약관의 제 조건에 따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한 지시 및 지침에 의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위함에 있어 보호를 받으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당사자들이 통지한 여하한 전자적 방식, 서신, 자료,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p> <p>4.~ 6. (생략)</p> <p>제10조 ~ 제17조 <생략></p>	<p>3. “은행”은 본 약관의 제 조건에 따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한 지시 및 지침에 의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위함에 있어 보호를 받으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당사자들이 통지한 여하한 전자적 방식, 서신, 자료,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p> <p>4.~ 6. (생략)</p> <p>제10조 ~ 제17조 <생략></p>	<p>“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수정</p>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